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83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김 윤 · 서왕진 · 최혁진
남인순 · 김남근 · 이주희
김영진 · 차규근 · 전진숙
송재봉 · 박지혜 · 염태영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 이상으로 두고 있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하도록 하며,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100”을 “50”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공익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4. 상시 구성원수가 <u>100인</u> 이상일 것</p> <p>5.·6. (생략)</p> <p>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u>한다</u>.</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50</u>----- -----</p> <p>5.·6. (현행과 같음)</p> <p>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하되, 공익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u></p>

의 공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
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